

『구미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장세구 의원 외 7명

2. 제안이유

- 현행 구미시의회의원 신분증은 국책사업 추진과 국회 교육 참석 등 의원들의 국회출입 편의제공을 위하여 RF카드(Radio Frequency Card)로 제작하며 국회 출입 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영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 의원 신분증에 RF카드 사용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각종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신분증에 RF카드 및 첨단기술 활용 등 편의 증진을 위한 별도 기능 추가 근거 규정 마련(안 제3조제2항)
- 별표 카드규격에 RF카드 사용 근거 명문화(안 별표 제7호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43조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전자 및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신분증 기능이 다양화되고 활용범위도 확대됨으로써 의원 신분증에 첨단기술 활용 등 편의증진을 위한 별도 기능 추가 근거규정 마련과 현재 사용되고 있는 RF카드 사용 근거를 명문화 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규칙개정에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